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9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 : 엄태영 • 유용원 • 김상훈

박충권 • 박덕흠 • 조지연

서천호 · 강명구 · 이종배
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·중·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(1) -----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 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(이하 이 조에서 "성과보상기금"이라 한다)의 공 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 -----2027년 12월 31일---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근로자(해당 기업의 최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핵심인력"이라 한다)가 공제납입금을 5년(중소기업 또 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 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5년) 이상 납입하고 그 성 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

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(이하 이 조에서 "기여금"이 라 한다) 부분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, 소득세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